

##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지역 기업·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경직적인 규제체계에서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‘포괄적 네거티브 전환’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0일

## 옥 천 군 수

### 1. 조례명 :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-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‘포괄적 네거티브 전환’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기업·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‘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’ 방식을 도입하고자 우리군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골자

- 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」 중 제안자의 대상을 옥천군민에서 “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”으로 확대(안 제1조)
- 「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」 중 “문화예술” 용어의 정의에 “영상”을 포함(안 제2조)

- 「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중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가능 대상에서 “최근 2년 이내”의 경쟁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확대(안 제3조)
- 「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」 중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상시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행산업, 유흥·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(안 제4조)
- 「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 중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“장애인”까지 포함 확대하고, 임대료 면제기준에서 “재해복구 등”을 삭제(안 제5조)
- 「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」 중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쟁제한적 규정 삭제(안 제6조)
- 「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조례」 중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“개인”까지 확대(안 제7조)

#### 4. 의견제출

- 「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082, FAX : (043)731-1984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#### 5. 붙임

-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##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옥천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”을 “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(이하 “국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출판”을 “영상, 출판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최근 2년이내 공공기관”을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4조(「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시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공장등록”을 “공장등록”으로, “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”를 “사행산업, 유흥·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”로 한다.

제5조(「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농업

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수급권자 및”을 “수급권자,”로, “국가유공자로서”를 “국가유공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재해복구 등 군수”를 “군수”로 한다.

제6조(「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7조(「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1조제1항 중 “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”을 “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, 체육단체, 개인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제1조(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“제안”이란 <u>옥천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</u> 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<u>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(이하 “국민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제2조(「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 한다), 음악, 무용 및 춤, 연극, 영화, 연예,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



<p>상시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인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<u>제조업관련 서비스업</u>으로서,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, 경영,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공장등록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행산업, 유흥·향락업</u>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제5조(「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사용료 감면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권자</u> 및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국가유공자</u>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: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</p>	<p>제10조(사용료 감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 <u>수급권자</u>, -----</p> <p>----- <u>국가유공자</u> 및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32조에 따라 <u>등록한 장애인</u>으로서 -----</p>

<p>2. <u>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임대료 면제</u></p>	<p>2. <u>군수</u>----- ----- -----</p>
---	--

제6조(「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공사의 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관급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9조(공사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「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위탁관리) ① <u>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법인 또는 체육단체</u>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1조(위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, 체육단체, 개인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 :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